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인력 2명(5급 2명)을 증원하고, 문화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세계유산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00. 00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3.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
및 평가 등 총괄

4.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
관리 등 총괄

제12장(제24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282”를 “284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281”을 “283”으로 하며, 일반직 계 “280”을 “282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0 다음에 “전산사무관 2”를 신설한다.

별표 5의2 중 총계 “291”을 “293”으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290”을 “292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289”를 “291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4 다음에

“전산사무관 2”를 신설한다.

별표 18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~ ⑥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⑦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문화유산 데이터표준화 · 품질관리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</u>	3. <u>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· 추진 및 평가 등 총괄</u>
4. <u>문화유산 데이터 플랫폼의 기획 · 구축 · 관리 및 활용</u>	4. <u>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·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
5. <u>문화유산 빅데이터의 보존 · 관리 및 활용</u>	<삭 제>
6. ~ 12. (생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</u>	<u><삭 제></u>
<u>제24조(평가대상 조직) 문화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.</u>	<u><삭 제>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282</u>	• <u>284</u>	+2
1. 공무원 (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• <u>281</u>	• <u>28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• <u>280</u>	• <u>28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5의2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총 계	<u>291</u>	<u>293</u>	+2
1. 공무원			
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<u>290</u>	<u>29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89</u>	<u>291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전산사무관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